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황경환 의원 외 인

2. 제안이유

-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04년 4월 1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고속철도 정차 역이 없는,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들은 국철의 운행 횟수 감축으로, 오히려 교통 여건이 악화되었음.

따라서,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안을 건의코자 함.

3. 주요내용

-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의 설치 지점(위치) 선정 시에는, 구미국가공단 기반시설로서의 활용도 제고 및 구미김천역 준공전 임시 역사 운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국가공단 활성화 정책에 연속성 유지 촉구.
-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구미를 경유하던 기존 열차의 운행횟수가 감소된 것을 감안하여, 대전↔동대구간 구간연계열차(새마을, 무궁화호)를 대폭 신.증설하여, 구미시 방문객 및 국내외 바이어들의 불편함 최소화.

- 2005년말 완공예정인 경부선 전철화 사업을 금년 말까지 조기준공하여, 국내 최대 내륙산업도시인 구미의 교통기반시설 확보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하는, 진정한 고속철도 시대를 열고자 개선 건의안을 제안함.

4. 참고사항

- 고속열차 운행 전후, 열차 종별 운행 현황

5. 검토의견

-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04년 4월 1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고속철도 정차 역이 없는,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들은 국철의 운행 횟수 감축으로, 오히려 교통 여건이 악화되었음.

따라서,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안을

-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관계 부서에 건의코자 함.

-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한 해제 청원 -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자 : 구미시 광평동 172-6 궁전주택 304호 이성수 외 38인

2.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의원 전 인 철

3. 청원사유(내용)

○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로 지정한 후,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 요망.

○ 도시계획결정현황

○ 최초결정

- '78. 4. 8 : 도량동 산15번지 일원 160,000㎡(48,400)
- '78. 12. 21 : 광평동 219-3번지 일원 79,149㎡(23,942) ※ 현재 주경기장 일원

○ 변경결정

- '87. 2. 7 : 도량동 산15번지 일원 폐지
- '87. 2. 7 : 광평동 219-3번지 일원 236,174㎡(71,442)시설변경결정

○ '90 도시계획재정비시 야구장 부지등 변경(축소) 입안제안

- 현재 야구장, 정구장, 배구장 일원 80,500㎡(24,500)를 축소
- '87년 운동장을 폐지한 도량동 산15번지 일원에 80,500㎡를 신설계획 입안

○ '91. 06. 28 변경계획 입안부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 '87년 운동장 폐지한 장소(도량동)에 다시 운동장 신설계획은 타당성 없음
-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 발휘와 이용의 편의상 기존(광평동)시설 존치

○ 광평동 종합운동장 부지현황

○ 전 체 : 236,174m² (71,442)

- 기 매 입 : 120,804m² (36,543) - 51%
- 국·공유지 : 31,271m² (9,459) - 13%
- 사 유 지 : 84,099m² (25,440) - 36%
 - 야구장, 배구장, 정구장 66,270m² (20,047) - 28%
 - 수영장, 보조경기장 17,829m² (5,393) - 8%

※ 미매입 토지매입비 추정 : 25,440 × 614천원/평 = 156억원 정도

※ 종합운동장 시설계획

- 주 경 기 장 36,000m² (기시행)
- 실내체육관 7,800m² (")
- 도로, 녹지, 주차장 130,874m² (일부시행 - 도로, 주차장)
- 야 구 장 24,600m²
- 보조경기장 23,000m²
- 실내수영장 1,200m²
- 정 구 장 7,200m²
- 배 구 장 5,500m²

○ 구미시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함.
- 따라서 청원대상토지는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로는 매입이 불가하므로
- 운동장 시설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새마을과)에서,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후, 선보상 후시설공사를 검토하고 있음.

○ 위 건과 관련 윤종상외 39인이 구미시 등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시 내용

○ 구미시 회시(2000. 8. 29 도시58410-1592)

-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배구장, 정구장 및 주차장 등으로 구성하고 단지화하여, 시설 상호간 이용상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 일부시설(야구장 등)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 우리 시 재정형편상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시설의 존치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하겠다고 회시하였음.

○ 경상북도 회시(2000. 9. 05 도시58407-10745)

- 구미 도시계획 종합운동장에 여러분들의 토지가 편입 된 것은 87년에 기존 운동장을 확장 할 시에 편입되었으며,
- 종합운동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고,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 경기장 이외에 여러 부분의 경기장을 함께 배치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구미시의 재정형편상 운동장 일부만 건립되고 나머지 경기장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있고, 주변지역이 개발된 점을 감안하여, 구미시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보상을 하여, 운동장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운동장 설치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국민고충위원회 회시(2000. 10. 23 이이07000-1351)
 - 도시계획의 해제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도시계획의 결정 취지, 목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도시계획법(200. 7. 1 시행)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도시 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집행이 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존.폐여부를 2001.12.31까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계획입안권자인 피신청인에게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토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사항

- 진정서 회시 공문 사본(구미시, 경상북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검토의견

- 구미시 광평동 172-6 궁전주택 304호 이성수 외 38명으로부터 『도시 계획시설 지정토지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은
-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구미시에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로 지정한 후, 2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 요망하는 내용이며,

○ 구미시 회시내용(2000. 8. 29 도시58410-1592)을 살펴보면,

-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배구장, 정구장 및 주차장 등으로 구성하고 단지화하여, 시설 상호간 이용상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 일부시설(야구장 등)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 우리 시 재정형편상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시설의 존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하겠다고 회시 하였음.

○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및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또는 해제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할 경우에는, 청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것으로 판단됨.